

高層建物에 있어서의 火災의 安全

朴 鳳 賢

〈點檢 3 部長〉

本稿는 近刊 日本消防設備安全センタ(Fire Protection Equipment & Safety Center of Japan) 發刊 FESC(季刊)에 紹介된 國際防災研究調查會의 海外レポート로 先進外國(主로 歐洲)의 防災에 對한 綜合的인 規則을 要約한 것으로 技術職員의 業務에 參考가 되고자 譯載하였음. <翻譯者註>

이글은 1975年 4月 암스텔담에서 開催된 防火(Fire Protection)를 테마로 한 國際會議에 유럽 防火協議會(Conference of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urope)가 提出한 論文「高層빌딩에 있어서 火災의 安全」(Fire Safety in High Rise Building)의 法律에 관한 부분을抄譯한 것이다. 論文은 國別로 나누어져 있으나 内容을 下記 4項目으로 分類抽出해서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高層빌딩內의 防火에 관한 法律
2. 高層빌딩의 定義
3. 耐火性能 및 防火區劃
4. 避難, 警報, 消火設備

I. 오스트리아

1. 法 律

聯邦憲法에 依해 9個州는 全部 빌딩에 있어서 防火 및 建築法의 制定이 義務化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各州의 高層빌딩에 對한 安全規則이 細目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消防局(Austrian Fire Prevention Department)와 오스트리아聯邦消防隊長協會(Austrian Fire Brigade Association)는 다음의 2부터 4까지의 内容을 가지고 法令을 統一化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2. 定 義

빌딩의 높이 25m 以上의 것을 高層빌딩으로 한다.

3. 耐火性能 및 防火區劃

(1) 耐火性能

가) 耐火性能은 基本的으로 90分 以上으로 하고 特別한 경우에는 180分을 要求한다.

나) 外壁, 침실의 壁과 避難路의 壁은 90分 以上일 것.

다) 기타 칸막이壁은 30分 以上일 것.

(2) 防火區劃

가) 防火區劃은 $500m^2$ 이내마다 나누고 天井 을 防火材料로 한다.

또 構造는 上層과 下層의 窓의 相互間은 90分 以上的 耐火性能을 가진 것으로 하고 그 距離는 1.2m 以上으로 할 것.

나) 壁, 天井, 기둥, 지붕, 바닥과 热 및 音 的 遮斷用 材料 등은 모두 不然性의 것으로 할 것.

4. 避難, 警報, 消火設備

(1) 避難階段

가) 避難階段 相互間의 距離는 30m 以内로 하고 그 階段은 建物의 外部에 設置할 것.

나) 30m 以上의 高層빌딩은 避難用 엘레베터 를 設置할 것.

(2) 警報設備

寢室을 제외한 모든 部分에 自動火災探知設備 를 할 것.

(3) 消火設備

50m를 넘는 高層빌딩은 全體에 스프링클러設備를 할 것.

II. 벌기에

1. 法律

高層빌딩에 關한 法規는 1971年 반포된 NBN 713010 「高層빌딩에 있어서의 防火」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 労動者의 保護라는 觀點에서 「Reglement General Pour la Protection de Travail」과 일컬는 防火에 關한 法律이 定해져 있다.

2. 定義

地表에서 最上層의 바닥面까지가 25m를 넘는 것을 말함.

3. 耐火性能 및 防火區劃

(1) 耐火性能

기둥, 바닥, 벽과 보는 2時間 以上的 耐火性能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防火區劃

가) 一般層에서는 階段, 엘레베터 部分을 제외한 $2,500m^2$ 以內마다 區劃할 것. 다만, 最上層의 아파트 部分은 $2,500m^2$ 를 넘어도 상관없다.

나) 1層과 2層은 그 全容積이 $25,000m^3$ 를 넘지 않을 것.

4. 避難, 警報, 消火設備

(1) 避難設備

가) 原則의 으로 2個所 以上的 階段이 必要하다.

나) (a) 아파트는 幅 0.8m의 内部階段이 2個所 以上 (b) 幅 0.8m의 内部階段을 1個所 以上 과 幅 0.5m의 外部階段을 2個所 以上 (c) 幅 0.8m의 内部階段을 1個所 와 幅 0.8m의 外部階段 1個所 以上, 또는 (d) 幅 0.8m의 外部階段 2個所 以上을 設置할 것, 다만, 病院, 호텔, 事務所 等은 幅 1.2m의 階段을 2個所 以上 設置 할 必要가 있다.

(2) 警報, 消火設備

消火器, 屋內消火栓 및 火災探知機의 設備를 할 것,

III. 텐마크

1. 法律

關聯된 法令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를 法令은 火災豫防에 대해서 어떤 빌딩에도 適用된다.

1960年 建築法(코펜하겐을 제외)

1939年 코펜하겐 建築法

1960年 火災豫防法(코펜하겐을 제외)

1968年 코펜하겐 火災豫防法

1972年 建築規則(코펜하겐을 제외)

1939年 코펜하겐 建築規則

또는 公共 및 商用빌딩에 對해서는 1954年 職場에 있어서 健康 및 安全法이 있다.

2. 定義

有用한 最上層의 바닥이 消防車의 사다리가 미치지 않은 距離(普通地上 22m) 以上의 빌딩을 高層빌딩이라고 한다.

3. 耐火性能 및 防火區劃

(1) 耐火性能

가) 빌딩內의 單位區劃은 壁과 바닥으로 区劃되어 消火活動의 觀點에서 적어도 1時間 以上的 耐火性能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바닥 기둥 壁 등 支持構造物은 上部의 4層部分이 1시간 以上的 耐火性能. 그 以下の 層은 2시간 以上的 耐火性能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 外壁, 內壁, 天井 등의 表面은 엔마크火災研究所가 정한 耐火性能테스트로 1시간 以上的 性能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防火區劃

아파트의 最大區劃은 1가구당 150m² 以下로 하고 한편 避難階段에 接續하는 各層의 最大區劃面積은 500m² 以下로 한다.

4. 避難, 警報, 消火設備

(1) 避難階段

가) 避難階段은 地上보다 윗층에 接續되어 있는 各層과의 연결은 階段室을 通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나) 階段으로서 通路는 몇 세대든지 아파트 입구의 共用部分을 사용해도 좋으나 아파트의 도어에서 階段室의 도어까지의 距離는 6m 以内로 한다.

다) 公共 및 商用빌딩은 最低 2개소의 階段이

必要하고 그 相互間의 距離는 50m 以内로 한다.

라) 階段까지의 通路는 普偏的으로 常用복도로 통하게 되고 있으나 補助的으로 발코니로도 통할 수 있다거나 또는 복도가 스프링클러 등으로 保護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 上記한 바와 같은 빌딩에서 非常灯이 要求될 때도 있다.

(2) 警報, 消火設備

가) 消防設備로서 地上에는 消防펌프와 接續할 수 있는 送水管을 設置하고 각층에 放水口를 만들 것.

나) 無窓層의 빌딩에서는 排煙用 換氣設備의 設置가 義務化되어 있다.

다) 公共 및 商用빌딩에서는 火災探知設備 및 初期消火設備가 要求될 때도 있다.

IV. 프랑스

1. 法律

(1) 高層빌딩에 관한 主要한 法令은 다음과 같다.

1955년 10월 22일, 寢室의 構造에 관한 一般規則

1957년 10월 17일령, 建材의 급수 分類

1967년 11월 15일령, 高層빌딩의 構造와 火災豫防

1973년 10월 31일령, 公共建物에 있어서 火災와 폐기 危險防止

(2) 高層빌딩은 그 所在地에서 3km 以内에 消防署가 있는 경우에만 許可된다.

(3) 빌딩內에 可燃性의 液體・固體 및 가스의 貯藏은 禁止되어 있다.

(4) 빌딩內의 보일러室은 禁止되어 있으나 共同주방과 보일러室은 다음 條件을 충足시키는 경우에는 許可된다.

a. 最上層에 있을 것.

b. 가스의 供給은 빌딩의 바깥에서 파이프에

依할 것.

c. 建物의 構造는 爆發이 일어날 때 最小의 被害로서 그치게끔 設計되어 있을 것.

2. 定義

消火活動이나 避難을 위하여 使用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水準과 관련지어서 50m 以上의 아파트와 他빌딩보다 28m 以上 높은 전물을 高層ビル딩이라 본다.

3. 耐火性能 및 防火區劃

(1) 耐火性能

가) 파이프나 電路用의 垂直方向의 シャフト는 각 層마다 2時間 以上의 耐火性能을 가지는 材料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엘레베타部分은 복도와 2時間 以上의 耐火性能을 가지는 도어로 區劃되어 있을 것, 또 엘레베타는 3臺 以上이 같은 シャフト内에 設置되어서는 안된다.

(2) 防火區劃

빌딩은 각층마다 $2,500\text{m}^2$ 以内의 防火區劃을 設置하든가 또는 2개의 層에 걸치는 경우에는 $1,250\text{m}^2$ 以内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75m 以内로 한다.

4. 避難, 警報, 消火設備

(1) 避難設備

가) 高層ビル딩은 2個所 以上의 충분한 幅을 가진 避難階段이 10m 以上 30m 以内의 間隔으로 設置되어 있을 것.

나. 通路, 복도, 엘레베타 및 階段部分에는 居住者の 移動이 容易하게 될 수 있게 非常灯이 設置되어 있을 것.

(2) 警報, 消火設備

나) 各層에는 消防署와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이 準備되어 있을 것.

나) 各層에는 消火用 물양동이와 適切한 이동식 消火器가 設置되어 있을 것.

V. 네델란드

1. 法律

高層ビル딩의 火災豫防指針은 NSI 規格 3893에 기술되어 있다. 居室이라 할지라도 常用의 住居가 아닌 경우(迎賓館, 療養所 등)나 居室 아래에 있는 店舗, 事務所, 會議場 등은 이 指針의 對象이 되지 않고 별도의 規格이 準備되어 있다. 居住者的 區分에 따라 避難方法, 消火方法, 危險物의 貯藏과 使用 등에 관한 許多的 規定이 있고 이 規定이 地區當局에 對해서 防火와 安全에 관한 法的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2. 定義

通常의 住居用 빌딩으로 地上에서 13m 以上을 高層빌딩이라 한다.

3. 耐火性能 및 防火區劃

(1) 防火區劃으로서의 小區劃은 定해진 耐火性能이 要求되고 벽이나 바닥의 開口部는 耐火性能이 멀어지지 않게 保護되어 있어야 한다.

(2) 빌딩의 主要構造(기둥이나 보)는 適當한 耐火性能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3) 빌딩間의 热輻射나 燃燒物의 飛散에 의한 延燒를 막기 위해 建物의 크기나 높이 등에 따라 近接빌딩 사이의 最小距離를 定해 法의 으로 規制하고 있다.

4. 避難, 警報, 消火設備

(1) 避難階段等

居住者が 火災現場에서 避難할 때에 爪오없이 無事到達할 수 있게 階段의 位置, 數 등이 고려되고 階段까지의 避難路는 煙氣나 热로부터 保護되어야 한다.

(2) 警報, 消火設備

消防隊를 補佐하는 設備(消火栓시스템 등) 火災感知와 警報設備 및 初期火災用 消火器를 設置하고 확실하게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維持되어 있어야 한다.

<끝>